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8
----------	-----

제출연월일 : 2000. 2 . 2.

제 출 자 : 김진석의원외3인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정기회 운영제도 개선등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1999.8.31일자(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세부사항인 동법 시행령이 1999.12.31(대통령령 제16,672)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조정 (안 제2조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기타 필요사항 : 없 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매년 정기회 기간중"을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감사)① (생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u>매년 정기회 기간중</u> 7일의 범위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u>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u>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17조 (생략)	제3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